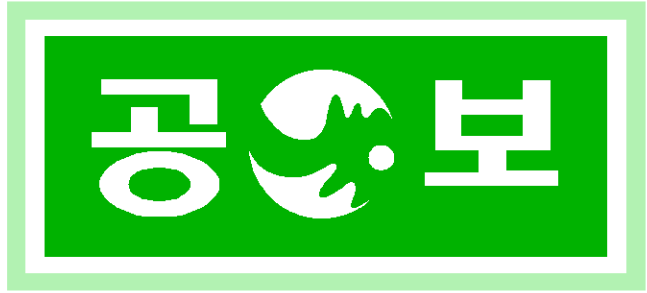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제 689 호 2011. 5. 23(월)

고 시

○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40호[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2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57호[통·반 명칭 관할구역 조정 공고] 3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1 - 40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1년 5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번호	피 허가 자		점용장소	점용목적	면적 (㎡)	허가기간	사용료 (원)	비 고
	주 소	성 명						
'11 -18	울산 북구 연안동 373-3	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장 백진환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57번지 도로에 인접한 공유수면	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간이사무실	36㎡	2011. 5. 19.~ 2011. 12. 31.	년제	조건부 허가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357호

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
울산광역시북구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결과를 다음과
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.

2011년 5월 23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시행일자 : 2011. 6. 1

통·반 조정내역

구 분	통		증 감	반		증 감	비고
	현 행	조 정		현 행	조 정		
계	207	208	증 1	1,843	1,856	증 13	
농소1동	26	26	-	314	314	-	
농소2동	35	35	-	384	384	-	
농소3동	37	37	-	408	408	-	
강 동 동	19	19	-	53	53	-	
효문동	27	28	증 1	235	248	증 13	
송 정 동	21	21	-	194	194	-	
양 정 동	20	20	-	114	114	-	
염 포 동	22	22	-	141	141	-	